제 안 규 정

제정 2012. 7.19 개정 2015.12. 7 시행 2015.12. 7 개정 2021.10.28 시행 2021.10.31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 직원(기타 사용인 포함)의 창의적인 제안을 공사 운영에 반영하여 경영혁신 및 고객서비스 개선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1.10.28.>
- 제2조(적용범위)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- 제3조(제안의 종류) 제안은 자유제안, 공모제안,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. <개정 2021.10.28.>
- 제4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. <개정 2021.10.28.>
 - 1. "제안"이라함은 공사의 운영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.
 - 2. "창안"이라함은 심사 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.
 - 3. "자유제안"이라함은 제안자가 과제를 자유로 선정하여 제출하는

제안을 말한다.

- 4. "공모제안"이라함은 사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.
- 5. "직무제안"이라함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 효과를 거둔 경우에 소속부서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.
- 제5조(제안자의 자격) 공사의 직원은 누구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다. 다만,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각자의 연구 분야를 명시하여야 한다.
- 제6조(제안사항)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10.28.>
 - 1.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항
 - 2. 유리 및 인권경영 확립에 관한 사항
 - 2의2. 공사의 사회적가치 창출에 관한 사항
 - 3.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항
 - 4. 기타 창의적인 업무 및 예산절감과 증대에 관한 사항
- 제7조(제안 결격사항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1.10.28.>
 - 1. 공사에서 이미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
 - 2.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·실용신안권·디자인권 또는 저작권 등에 속하는 것
 - 3.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

3의2. 일반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

3의3. 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

3의4. 특정 개인, 단체, 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4. 기타 제안 심사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 제7조의2(권장 및 지원)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 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, 특히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을 제작함에 있어 공사의 설비 또는 자료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[제11조에서 이동 2021.10.28.]

제8조(제안업무 관장)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, 모집, 홍보, 기타 제안제도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은 제안 업무 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. <개정 2015.12.7>

제 2 장 제 안 및 심 사<개정 2021.10.28.>

제9조(제안의 제출) ①제안은 제안업무 담당부서를 통해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. 단 공고에 정해진 기한이 있는 공모제안은 그 기한 내에, 이미 실시된 사항을 제안하는 직무제안은 그 개선효과를 알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5.12.7.><개정 2021.10.28.>

- ②제안은 그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 공 모제안은 공고에 정해진 형식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. <개정 2015.12.7><개정 2021.10.28.>
- ③<삭제 2021.10.28.>

제10조<삭제 2021.10.28.>

제11조<삭제 2021.10.28.>

- 제12조(제안의 접수 및 처리절차) ①제안이 접수된 경우 담당부서는 답변 절차를 통해 해당 제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리고 접수번호를 부여한다. <개정 2021.10.28.>
 - ②포털을 통해 자유제안이 공개 등록된 경우 제안업무 담당부서는 해당 제안내용의 유관부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0.28.>
 - ③<삭제 2021.10.28.>
 - ④<삭제 2021.10.28.>
 - ⑤제안내용은 심사결과 채택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열람시키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. 단 포털을 통해 공개 적으로 이루어진 자유제안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<신설 2021.10.28.>
- 제13조(예비심사) ①제안업무 담당부서는 제안의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하여 본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거칠 수 있다. <개정 2021.10.28.> ②예비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

2021.10.28.>

- 제13조의2(기본심사 및 처리) ①제안이 접수된 경우 제안업무 담당부 서는 조속히 기본심사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.
 - ②기본심사는 제안의 실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창의성, 효과성, 적합성을 검토한다.
 - ③제안의 기본심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실시한다.
 - 1. 자유제안 : 제안이 채택될 경우 이를 실시하게 될 부서의 장
 - 2. 공모제안 및 직무제안 :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

[본조 신설 2021.10.28.]

- 제13조의3(2차 심사) ①공모제안의 경우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채택을 확정하여야 한다.
 - ②전항의 심사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.
 - 1.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정한다.
 - 2. 내부위원은 임원 또는 재직기간 15년 이상 직원 중 사장이 지명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한다.
 - 3. 외부위원은 공모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사장이 정하는 이로하되, 위원회 구성의 과반이 되도록 한다.

[본조 신설 2021.10.28.]

제14조<삭제 2021.10.28.>

제15조<삭제 2021.10.28.>

제16조<삭제 2021.10.28.>

제17조<삭제 2021.10.28.>

제18조(2차 심사 기준) 제안의 심사는 경영효율성 및 고객만족도 향상, 창의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 평가한다.

[본조 제목개정 2021.10.28.]

제19조(조사, 실험) 위원회는 제안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, 관계부서 및 전문기관 등에 제안에 관한 조사, 실험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, 그에 따른 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.

제20조(심사결과 확정)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제안업무 소관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, 사장 및 소관 본부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사 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0.28.>

제 3 장 학 습 조 직<개정 2021.10.28.>

- 제20조의2(학습조직 구성) ①학습조직은 특정 학습분야에 대한 정보 교환 또는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정보 및 지식의 습득을 목표로 2인 이상의 직원 스스로 구성한다.
 - ②학습조직에는 리더를 두며 리더는 당해 학습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중에서 구성원들이 선출한다.

[본조 신설 2021.10.28.]

제20조의3(학습조직 등록) 학습조직의 리더는 학습조직 등록신청서 및 활동계획서를 학습조직 지원부서(이하 "지원부서")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하고, 지원부서의 장은 그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[본조 신설 2021.10.28.]

제20조의4(학습조직 활동 및 성과공유) ①지원부서의 장은 활동결과에 따른 성과물을 전사에 공유하여 이를 업무개선에 반영토록 독려해야 한다.

②지원부서장은 학습부서 활동결과 중 우수 활동를 선정하여 포상 할 수 있다.

[본조 신설 2021.10.28.]

제20조의5(활동지원) ①각 부서의 장은 교육 및 회의참석 등 부서원들의 학습조직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지원부서의 장은 학습조직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[본조 신설 2021.10.28.]

제 4 장 포상 및 창안비용 보상

제21조 <삭제 2021.10.28.>

제22조(포상 및 인사상 특전) 사장은 창안자에 대하여 인사규정에 의

거 포상 및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0.28.> 제23조(창안비용 보상) 창안에 따른 제비용은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안 업무 부서에 제출하면 실비 범위 내에서 적정한 금액을 창안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0.28.>

제5장 권리의 귀속 및 비밀유지

제24조(권리의 승계) 이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창안에 대한 모든 권리는 공사가 승계한다.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 공모에 정해진 내용에따라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0.28.>

제25조(비밀유지) 제안제도 운영을 담당한 직원은 그 제안의 내용을 업무상 목적 외에는 일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6 장 창안의 사후관리

- 제26조(창안의 발표) 창안은 공사의 게시판 등에 게재, 발표하여 그 공로와 재능을 널리 선양토록 하여야 한다.
- 제27조(창안의 실시) ①창안결과는 해당부서에 이첩하여 즉시 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적용시기,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사전조치할 사항이 있거나, 창안내용을 수정·보완하여 실시하여야 할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- ②창안의 실시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, 창안자를 일정기간 파견 근무 케 요청할 수 있다.
- 제28조(관리기간) 제안업무 담당부서는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,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·관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10.28.>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개정 2015.12.7.>

이 규정은 2015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개정 2021.10.28.>

이 규정은 2021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(별표 1) <삭제 2021.10.28.>

(별표 2) <삭제 2021.10.28.>

(별지 서식 제1호) <개정 2015.12.7.> <삭제 2021.10.28.>

(별지 서식 제 2 호) <삭제 2021.10.28.>

(별지 서식 제3호) <삭제 2021.10.28.>